

제 정	1998.05.07.
개 정	2024.05.22.

집행위원회 규정

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

집행위원회 규정 [2024.05.22.]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정관 제 31 조, 제 32 조 및 제 32 조의 4 에 의하여 집행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권한】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업무를 제외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성

제 3 조 【구성】

-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.)은 이사회의 결의로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.

제 4 조 【위원장】

-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고, 대표이사 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다.

제 5 조 【위원 아닌 자의 출석 등】

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시켜 의안 설명을 시키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의

제 6 조 【종류】

-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정기위원회는 매월 4 짜주 수요일에 개최한다. 다만, 개최일이 휴일인 경우에는

그 익일로 하며, 정기위원회일에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3.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 【소집권자】

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4 조 2 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위에 따른다.

제 8 조 【소집절차】

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7 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 【결의방법】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유·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2.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3.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【질서유지】

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11 조 【보고의무】

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의일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【긴급사항】

1.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.
2. 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3 조 【서면결의】

(2001. 03. 09. 삭제)

제 4 장 부의사항

제 14 조 【부의사항】

1.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2. 1 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
①경영에 관한 사항

- 1) 경영계획 및 반기 결산보고서 승인
- 2)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
- 3) 지점, 공장, 사무소 등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4) 기타 주요 경영현안

②재무에 관한 사항

- 1)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.5%미만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2)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.5%미만의 해외직접투자
- 3)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.5%미만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
- 4)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.5%이상~5%미만의 신규 차입 신규 한도 약정
- 5) 기타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기관 또는 외부기관이 이사회에 준하는 위원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

③기타

- 1)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
- 2)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
- 3) 기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영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

제 5 장 기타사항

제 15 조 【의사록】

1. 위원회의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간사부서에 보관한다.
2. 의사록은 필요할 경우, 집행부서의 업무집행을 위해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다.

제 16 조 【간사】

1. 위원회의 간사는 이사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2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7 조 【규정의 개폐】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

부 칙

부 칙 (1998.5.7.)

제 1 조 이 규정은 1998 년 5 월 7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3.9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01 년 3 월 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12.11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12 년 12 월 1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12.16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1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3.09.26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23 년 09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03.26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24 년 03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05.22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24 년 05 월 2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